

저작권재산권 양도동의서

한국기록관리학회 귀하

제1조 저작물(논문)의 표시

국문 제목 :

영문 제목 :

제2조 저작권재산권의 양도

- ① 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한국기록관리학회에게 양도한다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저작권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¹⁾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

- ①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, 실용신안권 출원, 디자인권 설정 등록,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.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.
- ②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.
- ③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,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,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와 그 외에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복제, 배포, 전송할 수 있다.

1)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. 예컨대,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.

제4조 보증 및 책임

- 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.
- i)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.
 - ii)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.
 - iii) 논문 내용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 - iv)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, 저자는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.
- 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1저자 : 000	일자 : 0000/00/00	서명 :
제2저자 : 000	일자 : 0000/00/00	서명 :
제3저자 : 000	일자 : 0000/00/00	서명 :
제4저자 : 000	일자 : 0000/00/00	서명 :